

상주시 공고 제 2023 - 685 호

「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 년 4 월 22 일

상 주 시



「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농식품 산업에 대한 지역 내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 농림수산물부 주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활용하기 위하여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용도를 추가함으로써 펀드 투자를 통한 청년 창업 지원 및 기업 유치 활동 등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정의 추가 (안 제2조)

- 벤처투자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 정의 신설

나. 기금 용도 추가 (안 제28조)

-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및 농식품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

3. 개정조례(안): 붙임참조

4. 의견 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1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(참조 : 투자경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기간: 2023. 4. 22. ~ 5. 11.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cjk9911@korea.kr

2) 주소 : (우37211)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(상주시청, 투자경제과)

3) 전화 : 054-537-7403

4) 팩스 : 054-537-625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투자경제과(전화 : 054-537-7403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 조례 개정안은 상주시 홈페이지 (www.sangju.go.kr → 행정정보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: 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의 건	비 고